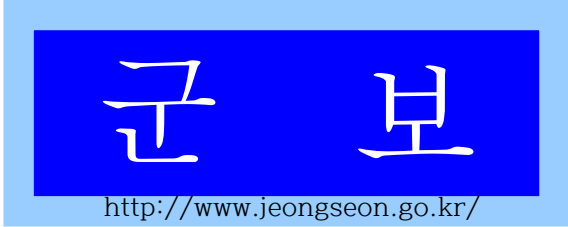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60호 2024. 5. 8.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3021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1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405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12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4-24호 정선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14
- 정선군 고시 제2024-25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실시계획인가 고시.....18

- 정선군 고시 제2024-31호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4-445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26
- 정선군 공고 제2024-449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14호선) 공사 완료 공고.....28
- 정선군 공고 제2024-463호 정선(남면)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29
- 정선군 공고 제2024-466호 군도6호 상습 침수위험지역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30
- 정선군 공고 제2024-51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33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16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296회 정선군의회(2024. 4. 26.)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21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민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선군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정선군민대상” (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수상 인원) 군민대상의 수상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상 대상) ① 군민대상의 수상 대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선군 향토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군 소속기관(읍·면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추천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3.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4. 주민등록초본 1통
-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3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8조(시상) 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 1.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심사
- 2.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군수 또는 위원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고 심사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대표 등 회원 및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회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수상자 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남, 여)
	주 소			
	소 속		직 위 (직 급)	
	전화번호			
주 요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추천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을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천자 : (서명 또는 인)</p> <p>정선군수 귀하</p>				
<p>※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p> <p style="padding-left: 40px;">2.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p> <p style="padding-left: 40px;">3. 주민등록초본 1부</p> <p style="padding-left: 40px;">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p>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1. 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2. 후보자 공적사항

가. 공적개요

나. 세부공적사항

연 월 일		공 적 사 항
부터	까지	

<비고> 본란이 부족할 때에는 동일 규격용지를 이용하여 별지로 작성첨부

첨 부 : 공적증빙자료 1부.

상기 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주 소)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년 수	성 별	공 적 요 약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내용>

정선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 및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사진, 성명, 나이, 경력사항, 공적사항 공개

년 월 일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의결서

□ 의 결 :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함.

순 위	직위(주소)	성 명	평가점수	선정결과	비 고

년 월 일

정선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선군민대상 수상자 대장

수상연도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위 및 경력		

[공적내용]

□ 개정이유

- 가. “정선군 향토민상” (1994년 ~ 2023년 / 164명 수상)의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상의 품격을 높이고,
- 나. 정선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상의 명칭(안 제2조)
 - 상의 명칭은 “정선군민대상” 으로 함
- 나. 수상 인원 및 대상(안 제3조 ~ 제4조)
 - 1) 수상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2)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귀감이 되는 자
- 다. 수상 제외자(안 제5조)
 - 1) 이 조례에 따라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같은 공적으로 정선군 향토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수상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결정(안 제6조 ~ 제8조)
 - 1) 군 소속기관(읍·면 포함)의 장과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함
 - 2) 수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함
 - 3)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 시상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마. 심사위원회(안 제9조 ~ 제11조)
 -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 2명으로 함
 - 3)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 대표 등 회원 및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4)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봄

규 칙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4.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405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규칙의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4-24호

정선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 가. 결정(변경)취지 : 기 조성된 종합운동장 내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증축을 통하여 지역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장을 통하여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에 기여
-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 다. 규 모 : 종합운동장 A=177,698.4㎡
 - 골프연습장 : A=7,794㎡ → 8,207㎡ 증)413㎡
 - 녹지 및 기타 : A=57,373.4㎡ → 56,960.4㎡ 감)413㎡
- 라. 정선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 마. 정선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변경없음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체육시설	종합 운동장	애산리 768일원	177,698.4	-	177,698.4	강원도 고시 제2008-218호 ('08.8.8)	-

다.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77,698.4	-	177,698.4	100.0	
운 동 시 설	-	77,995.0	증) 413	78,408	44.2	
주 경 기 장	1-1	30,570.0	-	30,570.0	17.2	
보조 경기장	1-2	15,590.0	-	15,590.0	8.8	
실내체육관	1-3	5,320.0	-	5,320.0	3.0	
궁도장	1-4	5,990.0	-	5,990.0	3.4	
테 니 스 장	1-5	7,117.0	-	7,117.0	4.0	
농구장	1-6	3,410.0	-	3,410.0	1.9	
실내야구연습장	1-7	1,185.0	-	1,185.0	0.7	
태권도연습장	1-8	1,019.0	-	1,019.0	0.6	
골프연습장	1-9	7,794.0	증) 413	8,207.0	4.6	
편 익 시 설	-	17,270.0	-	17,270.0	9.7	
주차장①	2-1	9,810.0	-	9,810.0	5.5	
주차장②	2-2	6,940.0	-	6,940.0	3.9	
주차장③	2-3	520.0	-	520.0	0.3	
광장 및 조경시설	-	66,933.4	감) 413	66,520.4	37.4	
광장①	3-1	1,960.0	-	1,960.0	1.1	
광장②	3-2	2,370.0	-	2,370.0	1.3	
광장③	3-3	5,230.0	-	5,230.0	2.9	
녹지 및 기타	3-4	57,373.4	감) 413	56,960.4	32.1	
교 통 시 설	-	15,500.0	-	15,500.0	8.7	
도 로	4	15,500.0	-	15,500.0	8.7	

2)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²)			시 설 규 모 (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7,698.4	-	177,698.4	17,778.10	증 176.44	17,954.54	26,340.68	증 343.32	26,684.00		
운동 시설	소		계	77,995.0	증 413	78,408.0	17,728.40	증 176.44	17,904.84	26,273.44	증 343.32	26,616.76	
	1-1	주경기장	30,570.0	-	30,570.0	8,810.97	-	8,810.97	13,494.42	-	13,494.42		
	1-2	보조 경기장	15,590.0	-	15,590.0	607.50	-	607.50	721.82	-	721.82		
	1-3	실내 체육관	5,320.0	-	5,320.0	4,910.26	-	4,910.26	8,003.33	-	8,003.33		
	1-4	공도장	5,990.0	-	5,990.0	402.55	-	402.55	454.06	-	454.06		
	1-5	테니스장	7,117.0	-	7,117.0	499.77	-	499.77	987.38	-	987.38		
	1-6	농구장	3,410.0	-	3,410.0	102.06	-	102.06	102.06	-	102.06		
	1-7	실내야구 연습장	1,185.0	-	1,185.0	299.20	-	299.20	299.20	-	299.20		
	1-8	태권도 연습장	1,019.0	-	1,019.0	378.00	-	378.00	378.00	-	378.00		
	1-9	골프 연습장	7,794.0	증 413	8,207.0	1,718.09	증 176.44	1,894.53	1,833.17	증 343.32	2,176.49		
편의 시설	소		계	17,270.0	-	17,270.0	-	-	-	-	-		
	2-1	주차장①	9,810.0	-	9,810.0	-	-	-	-	-	-		
	2-2	주차장②	6,940.0	-	6,940.0	-	-	-	-	-	-		
	2-3	주차장③	520.0	-	520.0	-	-	-	-	-	-		
광장 및 조경 시설	소		계	66,933.4	감 413	66,520.4	49.70	-	49.70	67.24	-	67.24	
	3-1	광장①	1,960.0	-	1,960.0	-	-	-	-	-	-		
	3-2	광장②	2,370.0	-	2,370.0	-	-	-	-	-	-		
	3-3	광장③	5,230.0	-	5,230.0	-	-	-	-	-	-		
	3-4	녹지 및 기타	57,373.4	감 413	56,960.4	49.70	-	49.70	67.24	-	67.24		
교통 시설	소		계	15,500.0	-	15,500.0	-	-	-	-	-		
	4	도로	15,500.0	-	15,500.0	-	-	-	-	-	-		

■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골프 연습장	○변경 - 부지면적 : 7,794㎡ → 8,207㎡ (증)413㎡ - 건축면적 : 1,718.09㎡ → 1,894.53㎡ (증)176.44㎡ - 건축연면적 : 1,833.17㎡ → 2,176.49㎡ (증)343.32㎡	○골프연습장 확장(스크린골프장)에 따른 부지면적,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3-4	녹지 및 기타	○변경 - 부지면적 : 57,373.4㎡ → 56,960.4㎡ (감)413㎡ - 건축면적 : 49.7㎡ (변경없음) - 건축연면적 : 67.24㎡ (변경없음)	○종합운동장 내 골프연습장 증설로 인한 녹지 및 기타 부지 면적 감소

정선군 고시 제2024-25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고시되어, 정선군 고시 제 2024-10호(2024. 2. 2.)호로 변경 결정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4)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 2) 명 칭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신축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주차장)	주차장 4	□ A=4,282㎡	□ 주차타워 신축 A=4,282㎡(지상 3층) - 건축면적 : 2,152.21㎡ - 연 면 적 : 6,087.08㎡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장)
-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로 1226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고한읍 고한리	120-5	주차장	2,894	2,349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2	고한읍 고한리	120-23	대	867	349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3	고한읍 고한리	120-48	주차장	97	97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4	고한읍 고한리	121-19	대	1,969	1,213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5	고한읍 고한리	124-9	전	119	119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6	고한읍 고한리	산1-93	임야	191	155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계				6,137	4,282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정선군 고시 제2024-31호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2024. 3. 15.)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별 가마우지 포상금 지급 근거 및 금액 일원화 필요
-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및 시료채취비 부정청구에 따른 국가 재정손실 및 행정력 낭비 발생

2. 주요내용

-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으로 인하여 가마우지 포획포상금 1마리당 2만원 신설(안 제4조제2항3호)
-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및 시료채취비 부정청구 시 피해방지단의 제제 조항 신설(안 제4조 5항)

3. 개정 규칙안: [붙임2]

4. 입법예고: 2024. 5. 7. ~ 2024. 5.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정선군수(=환경과)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전화(033-560-2345), 팩스(033-560-2589)
 - 주 소: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문화예술회관 2층 환경과)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와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 2. 멧돼지 1마리당 7만원
- 3. 가마우지 1마리당 2만원

⑤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피해방지단 운영지원)</p> <p>① (생 략)</p> <p>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고라니 1마리당 5만원</p> <p>2. 멧돼지 1마리당 7만원</p> <p>③ ~ ④ (생 략)</p> <p><신 설></p>	<p>제4조(피해방지단 운영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p> <p>2. -----</p> <p>3. <u>가마우지 1마리당 2만원</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군수는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u></p>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4-445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3단계)” 추진을 위한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2. 계획의 개요

가. 건 명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일원

다. 변경사유 : 정선 남부권의 대표 관광자원인 삼탄아트마인에 새로운 컨셉으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전시중심에서 체험·체류형 기능도입으로 방문욕구를 증대하고자 지구 단위계획 변경 수립

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 A=46,030㎡(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레도(신설) : L=2,779m(구역내 305m), A=38,286㎡(구역내 3,923㎡)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관광휴양시설용지 면적 증가 - A=18,407㎡ → 19,418㎡ (증 1,011㎡)

▶ 공공시설용지 면적 감소 - A=13,035㎡ → 12,674㎡ (감 361㎡)

▶ 녹지용지 면적 감소 - A=14,588㎡ → 13,938㎡ (감 65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삼탄아트센터 건축물 용도 변경 (숙소 → 일반숙박시설 추가)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4. 4. 19. ~ 2024. 5. 3.(계재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고한읍 고한리	5-26	잡	48,913	46,03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말사정암사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	-	-	-
계				48,913	46,030						

정선군 공고 제2024-449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14호선) 공사 완료 공고

정선군 고시 제2003-41(2003. 5. 9.)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 2-14호선)에 대하여 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2-1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 사업
 - 나. 명 칭: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금회시행	
교통시설 (도로)	소로 2-14호선	L=256m, B=8.0~10.0m	L=256m, B=8.0~10.0m, A=2,302㎡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식회사 선(대표이사 노상균)
 -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

- 5. 사업기간
 - 가. 착수일 : 2021. 5. 28.
 - 나. 준공일 : 2024. 4. 12.

정선군 공고 제2024-463호

정선(남면)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남면)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 가.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 나. 위 치 : 정선군 남면 무릉리 614-2번지 일원
- 다. 면 적 : 3,506㎡
- 라. 주요변경내용 : 주차장 폐지

2. 공람목적 : 정선(남면)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3. 공람장소 및 기간

-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남면 행정복지센터
- 나. 공람기간 : 2024. 4. 26. ~ 5. 10.(14일이상)

4.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 실음 생략

5.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도면 : 실음 생략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남면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남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4-466호

군도6호 상습 침수위험지역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하천수위 상승 시 상습 침수 위험지역 선제적 대응을 위한 CCTV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군도6호 상습 침수위험지역 CCTV 설치 사업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군도6호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설 구축 구간내 도로이용자 안전 확보와 재난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 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4. 행정예고 기간 : 2024. 04. 23. ~ 05. 13.(20일간)

5. 공고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https://www.jeongseon.go.kr/portal>)

6. 설치장소(정선군 관내)

연번	주 소	용 도	촬영시간	녹화기간	운영기관	비고
1	정선읍 가수리 198번지 일원	재난감시CCTV	24시간	30일	안전과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05.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안전과)으로 서면(우편, FAX)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04. 23. ~ 05. 13.(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우편은 제출 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과 그 사유 등)

라. 제출처 : 정선군 안전과 재난대응팀

◦ 우편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 팩스 : 033)560-217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정선군 안전과 재난대응팀 (033-560-293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선군 공고 제2024-51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정선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정 선 군 수

1. 공고 목적

건설사업자가 정선군에서 발주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시 선정을 위한 명부를 마련하고자 함.

2. 참가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공고마감일까지 강원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건축, 종합분야)

3. 제출서류

-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붙임서식 별지 제7호]
-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붙임서식 별지 제8호]
- 다.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공고 일정

- 가. 모집 공고
 - 일 정 : 2024. 5. 7.(화) ~ 5. 28.(화)(20일 이상)
 - ※ 홈페이지 : www.jeongseon.go.kr(열린군정→군정소식→공고/고시)
- 나. 신청서 접수·마감

- 접수 기간 : 2023. 5. 22.(수) ~ 5. 28.(화) 18:00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 장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 토목팀

다. 명부 공개

- 공개 일자 : 2024. 6. 5.(수)(예정)
- ※ 홈페이지 : www.jeongseon.go.kr(열린군정→군정소식→공고/고시)

5. 기타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직무 분야별 참가기관이 2개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 또는 추가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다.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모집할 수 있습니다.
- 라.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의 지정은 추후 별도 공고 시 공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정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 토목팀(033-560-2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16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7일

정선군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주차 이용 배려 대상을 임산부,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 약자로 확대하여 주차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인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조성(안 23조의 2)
-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별표 4 신설)

3. 예고기간 : 2024. 5. 7 ~ 5. 12.(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2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17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sbonnie@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노외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4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3조의2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노외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u></p> <p><u>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u> <u>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u> <u>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u> <p><u>③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u></p>

	<p><u>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u>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u><u>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u><u>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u><u>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u> <p><u>④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4에 따른다.</u></p>
--	---

[별표 4]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제23조의2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확장형(가로 2.6m 이상 × 세로 5.2m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
- 마크 규격 : 가로 140cm × 세로 100cm
2. 색채
마크의 색은 보라색을 사용한다.
3. 설치 위치
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표기한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